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989호 2013. 11. 11.(월)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1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1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고 ----- 11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17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207호 분할개시결정공고 ----- 2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1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1.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반복되는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치단체가 스스로 시스템적으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 구축으로 비리 및 행정오류 스스로 사전예방
- 청백-e시스템으로 내부통제 되지 않는 인허가, 사회복지 등 비리 개연성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 관리자가 사전진단으로 업무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의 개개인의 비리, 공직가치공직윤리,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청렴마인드 제고

###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 11.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  
☎ 032-560-4071 / Fax 032-560-27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 2013. 10.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력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

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과·소·동장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과·소·동장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과·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장 청백-e 시스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감사부서

-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안전행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와의 협약
-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2. 실무부서

-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3. 지원부서

-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 4. 실무책임자

-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5. 관리자

-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①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 3. 정보화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①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14조(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 ①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의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지정)** ①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전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된다.

④ 구청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 ②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③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0조(포상)**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19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명 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목 적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내 용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정책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퇴소,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후견인 선임·변경 등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함.
4. 공고기간 : **2013. 11. 11.~ 12. 2. (21일간)**
5.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및 구보
6. 의견제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서구청 가정복지과)에게 서면으로 제출
7.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가정복지과(☎032-560-5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관련법령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1]****주요 관련법령**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b>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서</b>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 정 대 상	검 토 의 견 ( 의견제출 내용 )			
<p>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인천광역시 서구청장</b> 귀하</p>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북부고용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202호

## 인천광역시 서구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06.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13. 11. 06. ~ 11. 20.(15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구 분	계	로	길	비고
북항 배후부지	8	1	7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의견 제출방법
 

**【별첨】** 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2)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2786)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토지정보과 (404-701)
5. 도로명 확정 : 의견수렴 후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되며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 조서

연번	도로 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km)	폭(m)		
1	로	북항로 (구간연장)	석남동	648	원창동	437-23	3.083(종전) 4.330(변경)	34	20	인천의 대표적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2	길	북항로32번길	원창동	386	원창동	381-79	0.624	15.78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도로
3	길	북항로32번안길	원창동	381-88	원창동	381-79	0.690	14.85	20	북항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길	북항로31번길	석남동	641-1	석남동	647	0.837	20.51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길	북항로206번길	원창동	395-2	원창동	395-3	0.608	20.42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길	북항로207번길	원창동	395-2	원창동	395-1	0.996	20.42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길	북항로335번길	원창동	437-23	원창동	397-12	0.622	26.14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길	북항로363번길	원창동	437-23	원창동	397-12	0.626	24.03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3-1207호

## 분 할 개 시 결 정 공 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3. 11. 7. ~ 2013. 11. 22.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구	동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서구	오류동	395-114	대	496.0	최광철	1957. 09. 17	서구 원당대로 205번길 36-10	김정자 윤태성
서구	오류동	395-103	대	496.0	노재명	1961. 02. 24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오로 90번길 65	김영진 이영

2013년 11월 0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